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6. 25.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년 6월 5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0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0. 6. 1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으로 실효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안 제7조의2)
- 조례상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법조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 안 제7조의2를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 받아 왔으나, 2020. 7. 1.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점이 도래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변경 지정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구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장기간 재산권에 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 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30 호
----------	---------

제출연월일: 2020. 6.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장기 미집행되어 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경우에, 기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재산세 50% 감면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투자 감면에 대하여 감면율 및 감면기한을 조례에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 조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 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안 제7조의2)
- 다. 조례상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법조항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0. 4. 23. ~ 5. 13./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제12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기준일로부터”를 “기준일부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 중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적용례) 제7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제12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p> <p>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2항제3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및 제1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p>	<p>제5조(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 ----- 기준일부터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 ----- . &lt;단서 삭제&gt;</p> <p>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p> <p>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p>

<신 설>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  
-----.